

의안
번호

4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2. 24.

전문위원 이 현 숙

I .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오중균 의원 외 19명 공동발의

나. 의안번호 : 제410호

다. 제안일자 : 2025. 2. 3.

라. 회부일자 : 2025. 2. 10.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법률 제19699호, 2023. 9.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연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현행 조례는 교육대상이 현직 의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범위에 의원당선인을 포함(안 제2조제1항)
- 나. 교육연수계획의 변경을 포함(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 다. 교육연수계획에 의원당선인 지원 사항을 포함(안 제3조제3항)
-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 라. 입법예고
 - 1) 예고기간 : 2025. 2. 6. ~ 2025. 2. 12.
 -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Ⅱ. 검토의견

□ 개요 및 취지

- 본 조례안은 2023. 9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지방의회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자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며,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사회와 지방행정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수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역대 전국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초선의원 평균 비율이 광역의회의 경우 66%, 기초의회의 경우 53%를 상회함.

< 지방의회의원(지역구) 선수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의원정수	초선(%)	2선	3선	4선 이상
9기 (2022.7.~2026.6)	광역	892	594 (68.1)	215 (24.7)	47 (5.4)	16 (1.8)
	기초	2,987	1,666 (55.8)	861 (28.9)	313 (10.5)	147 (4.9)
8기 (2018.7~2022.6)	광역	829	615 (74.2)	136 (16.4)	68 (8.2)	10 (1.2)
	기초	2,927	1,717 (58.7)	721 (24.6)	340 (11.6)	149 (5.0)
7기 (2014.7~2018.6)	광역	794	433 (54.5)	271 (34.1)	71 (8.9)	19 (2.4)
	기초	2,898	1,460 (50.4)	916 (31.6)	376 (13)	146 (5)

※ 주: 의원정수는 지역구 의원수이며, 비례대표는 제외한 수치임

※ 자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23

- 마찬가지로, 성북구의회의 제7대부터 9대까지의 선수현황을 살펴보면, 초선의원의 비율은 평균 50%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성북구의회 의원 선수 현황 >

구 분	의원정수	초선	2선	3선	4선 이상
제9대	22명	11명(50.0%)	5명(22.8%)	3명(13.6%)	3(13.6%)
제8대	22명	13명(59.1%)	5명(22.8%)	3명(13.6%)	1(4.5%)
제7대	22명	9명(40.9%)	7명(31.9%)	3명(13.6%)	3(13.6%)

- 그럼에도 초선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7월 1일부터 원 구성을 시작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재선 이상 의원보다 의회조직과 역할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직무역량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계가 있음.
- 현행 조례에서는 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 대상을 현 소속 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1) 개정을 반영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성북구의회의원당선인까지 교육연수 대상을 확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지방자치법」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적용범위), 적용 대상자 추가

- 성북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하던 적용범위를,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여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근거를 규정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

나. 안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정비

- 안 제3조제1항에 후단을 신설, 교육연수 계획수립 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으나, 연수 계획 변경 시에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연수가 되도록 규정.
- 안 제3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 제5호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하도록 교육 시기를 명확하게 명시함.
- 안 제3조제3항 5호 신설,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의원당선인이 교육연수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후단 신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 ----- ----- ----- ----- 또한 교육연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u>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u>

다. 안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안 제5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정비

- 의장은 교육연수계획 수립뿐만이 아니라 교육계획 변경시에도 지체없이
의원에게 알리도록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법령상 미비점 개선.

현행	개정안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 ----- 수립 또는 변경한 ----- -- 알려야 ----.
제5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 ---- (생략)	제5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① ---- 별지 제1호서식 ----- (현행과 같음)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성북구의회가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원이 임기 개시와 동시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법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성북구의회 의원당선인들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재선 의원 맞춤형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를 하는 등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